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 퍼스트(B-1BL) 특별공급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지구 B-1BL(통진읍 마송리 53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17층 13개동 총 841세대 중 일반공급 841세대
- 입주시기 : 2023년 4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 별 공급세대수 * (예비)

구 분			59A	59B	59C	75A	75B	75C	84A	84B	84C	합 계
일반(기관추천)공급	장애인	경기도청	1(3)	1(3)	2(6)	1(3)	1(3)	1(3)	1(3)	2(6)	2(6)	12(36)
		서울시청	1(3)	1(3)	2(6)	1(3)	1(3)	1(3)	1(3)	2(6)	2(6)	12(36)
		인천시청	1(3)	1(3)	2(6)	1(3)	1(3)	1(3)	1(3)	2(6)	2(6)	12(36)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1(3)	1(3)	1(3)	1(3)	1(3)	1(3)	1(3)	1(3)	2(6)	10(30)
		장기복무제대군인	0	1(3)	1(3)	0	0	1(3)	1(3)	1(3)	2(6)	7(21)
	10년 장기복무 군인		0	1(3)	1(3)	0	0	1(3)	1(3)	1(3)	3(9)	8(24)
	중소기업근로자		1(3)	2(6)	1(3)	1(3)	1(3)	2(6)	1(3)	1(3)	3(9)	13(39)
	북한이탈주민		1(3)	2(6)	1(3)	0	0	2(6)	1(3)	1(3)	2(6)	10(30)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2020.11.09(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 10:00~14:00)	인터넷 청약(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 - 사업주체 주택전시관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1888-9번지)

■ 당첨자 발표 일정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 일시: 2020.11.17.(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분양일정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0월 25일	10월 26일	10월 27일	10월 28일	10월 29일	10월 30일	10월 31일
					GRAND OPEN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11월 1일	11월 2일	11월 3일	11월 4일	11월 5일	11월 6일	11월 7일
11월 8일	11월 9일	11월 10일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4일
	특별공급(아파트)	1순위(아파트)	2순위(아파트)			
11월 15일	11월 16일	11월 17일	11월 18일	11월 19일	11월 20일	11월 21일
		당첨지정자				
11월 22일	11월 23일	11월 24일	11월 25일	11월 26일	11월 27일	11월 28일
11월 29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2일	12월 3일	12월 4일	12월 5일
		청약계약 1일	청약계약 2일	청약계약 3일	예비입주계약	

※ 특별공급 세대수 외 청약 일정 및 계약 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첨부

1.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 퍼스트 아파트 특별공급 안내문 1부
2. 김포마송지구 대방엘리움 더 퍼스트 리플렛 1부 -붙.

구분	내용
1회 한경/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취소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무주택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가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청약에 한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김포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4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지원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동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